

뇌과학연구원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이하 ‘뇌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뇌과학연구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번지에 둔다.

제3조(뇌과학연구원의 목적) 뇌과학연구원은 뇌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개발을 통해 뇌질환의 의학적 적용과 의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4조(구성) ①뇌과학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29.)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리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뇌과학연구원에 뇌영상연구센터, 진단치료제연구센터, 치매파킨슨병연구센터, 정신의학연구센터, 국소뇌질환연구센터, 뇌혈관질환연구센터, 나노·유전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4.01.10.)

②뇌과학연구원에 연구기획조정실을 두며, 행정지원팀, 장비운영팀을 두고,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1.10.)

③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1.10.)

④각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01.10.)

1. 뇌영상연구센터는 뇌 및 신경계 관련분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기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임상적 응용에 관한 사항

4-1-21~2 제4편 부속기관

2. 진단치료제연구센터는 뇌 및 신경계 관련분야 질환에 대한치료제 개발에 관한 사항 및 뇌 및 신경계 관련분야 질환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표적 인자 발굴에 관한 사항
3. 치매과킨슨병연구센터는 뇌 및 신경계 관련분야 질환에 대한 기초적 연구, 진단치료 및 예방에 관한 조사와 연구결과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정신의학연구센터는 뇌건강증진 및 환경의학, 산업의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초적인 연구와 뇌질환의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소뇌질환연구센터는 뇌신경계영역 질환의 구조/기능 영상연구를 통한 영상진단법 개발연구와 뇌기능의 영상적 뇌지도화 연구에 관한 사항
6. 뇌혈관질환연구센터는 뇌혈관질환의 원인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해부학적 및 기능적 변화와 연구에 대한 사항
7. 나노·유전체연구센터는 뇌 및 신경계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예방, 진단과 치료를 위한 나노기술, 유전체 관련 기술, 바이오마커 관련 기술 등 신기술개발과 각 분야의 융합연구와 연구결과의 임상적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연구기획조정실은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조정과 지원 장비의 관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서무, 회계, 보안 및 기타 행정에 관한사항

제6조(연구원) ① 뇌과학연구원은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원보 및 위탁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1.10.)

② (삭제 2014.01.10.)

③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관설립및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1.10.)

④ (삭제 2014.01.10.)

⑤위탁연구원은 산업체 및 외부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7조(기획심의위원회) ①뇌과학연구원의 연구계획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하여 기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1.10.)

②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원장과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각 센터의 센터장과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임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장·단기 연구계획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은 당연직인 원장, 부원장, 각 센터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4.01.10.)

②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임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 뇌과학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1.10.)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연구비등 외부 연구비
2. 교비 및 산학협력단 보조금
3. 기금 및 연구사업 수익금
4.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5. 기타 수입

제11조(성과급) 본 연구원의 사업수행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외부지원금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급기준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뇌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01.10.)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